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00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A-3BL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남양주왕숙 A-3BL 통합공공임대주택)

1. 사 업 명 : 남양주왕숙 A-3BL 공공주택 건설사업(통합공공임대주택)
2. 사업시행자
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 - 대지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6-3번지 일원
(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-3BL)
 - 사업면적 : 14,784.00㎡
 - 대지면적 : 14,784.00㎡
 - 연 면 적 : 43,729.35㎡
 - 사업규모 : 아파트 6개동(통합공공임대 495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 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(라멘)
4. 사 업 비 : 136,718,280천원 (주택도시기금 29,750,369천원)
5. 사업기간 : 2023. 12. ~ 2027. 12.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(031-8008-3227), 남양주시 주택과(031-590-4416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02-3416-3549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